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

2021. 1. 29

주식회사 모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

1. 일반현황 ('20년 12월말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주식회사 모젯
대표자	권순영
정보통신 주요서비스 /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	정오의데이트 / 약 5.4만명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	약 76억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소셜사업본부장 민승기

2.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현재까지 구축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은 아래와 내부 모니터링 강화와 신고 기능 구축입니다.

1) 청소년보호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전담부서 지정과 자체 모니터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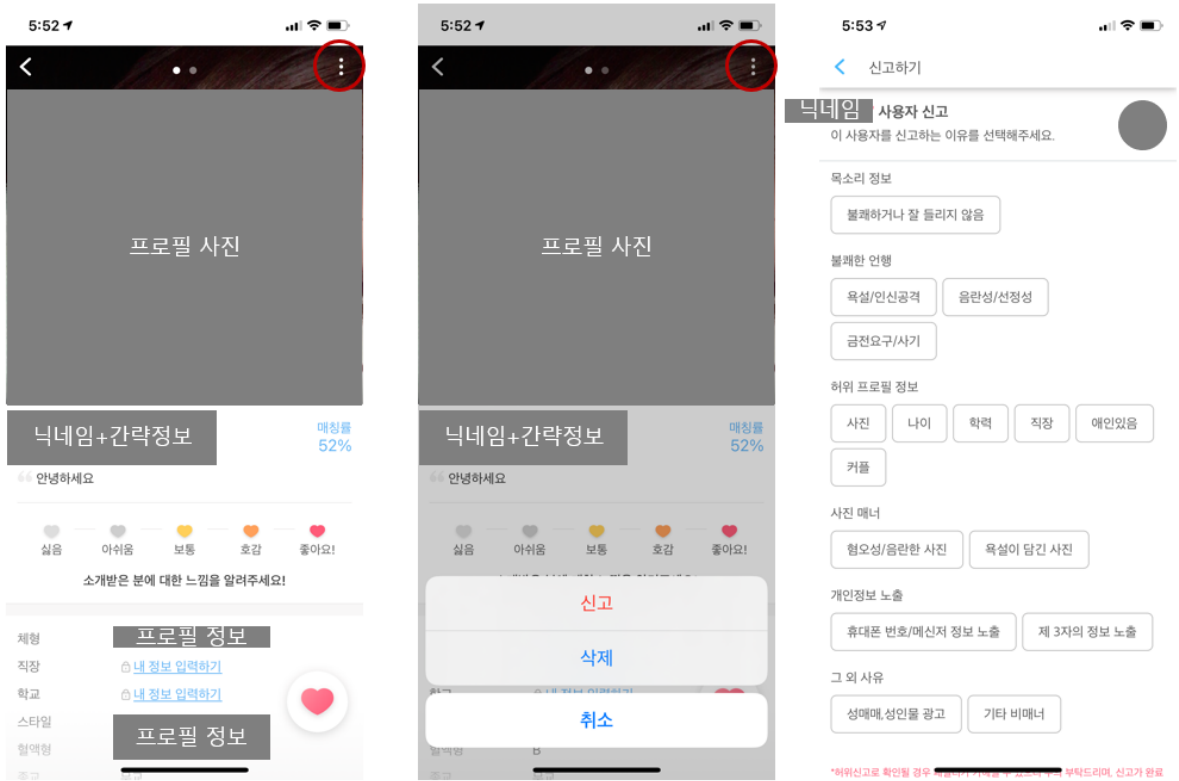
- 프로젝트팀 운영파트를 전담부서로 지정 및 고객센터 운영
(info.noondate@mozzet.com | TEL 070-4742-3254)
- 전담부서 내 주말 및 연휴 당번 제도 운영하며 매일 모니터링
-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에 따름

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구축

- 앱 서비스 내 영상/이미지 등을 업로드하여 노출되는 채널은 프로필과 커뮤니티 게시판이며, 해당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이미지 및 게시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구축하여 신고 접수 중
- 신고는 간편하게 하되, 실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이슈로 확인 판단 시 신고자와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식 신고 양식을 수령하는 업무 프로세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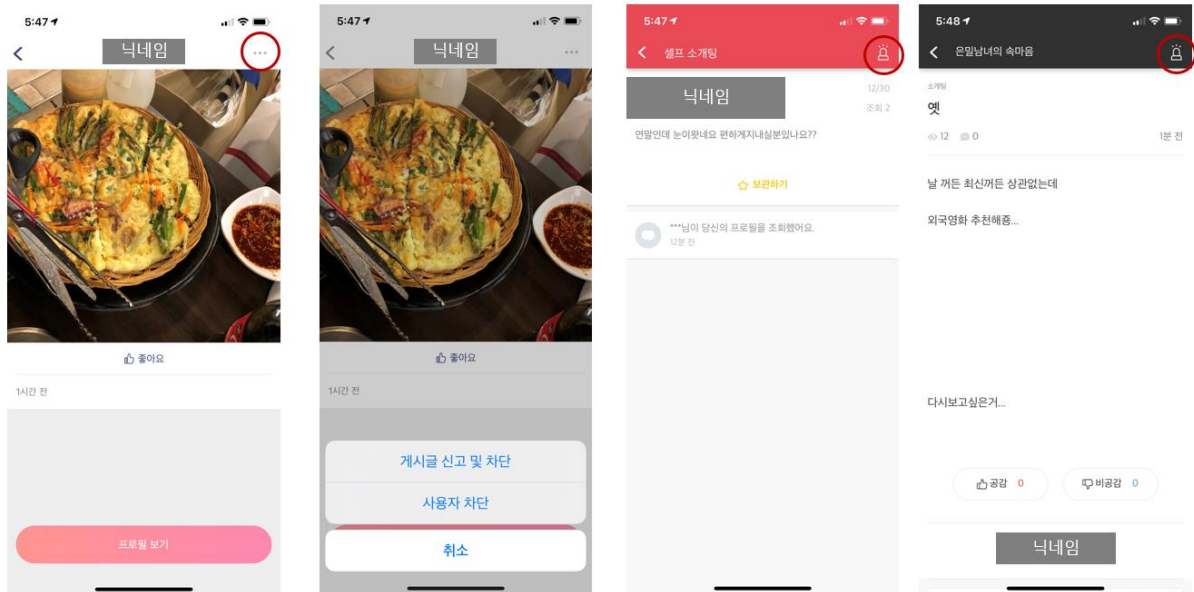
앱 신고 화면

앱 화면_프로필 신고 기능



커뮤니티 신고화면

앱 화면_게시판 신고 기능



3.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 '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기간: '20.12.10~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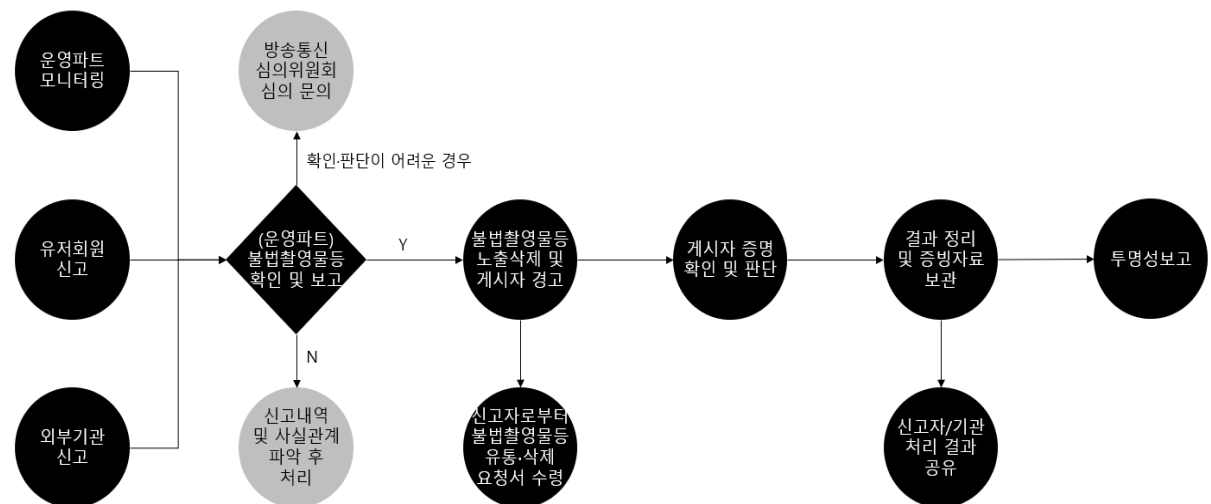
- 기간 내 불법촬영물 신고 건수: 없음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신고 접수	신고·삭제 요청인	피해자 등											0	0	
		기관·단체												0	0
		소계												0	0
	사유	불법촬영물												0	0
		허위영상물 등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처리 결과	자체 삭제·접속차단												0	0	
	해당없음												0	0	
	방심위 심의요청	심의삭제·차단												0	0
		해당없음												0	0
		각하 등												0	0
	소계													0	0
	삭제·차단 사유	불법촬영물												0	0
		허위영상물 등												0	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0	0

※ 요청사유 및 삭제·차단 사유는 중복계상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

○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 “불법촬영물등” 정의는 법률에 의거하여 판단

가. 불법촬영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나. 허위영상물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가공물·합성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구분	정	부
성명	민승기	김지원
부서	소셜사업본부	프로덕트팀
직책	본부장	매니저
지정일	2020.12.24	2020.12.24

6.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

구분	교육일	교육명	참석자	시간	교육기관
교육실시	2020.12.24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취지 이해 및 운 영 절차 수립	민승기 외 3명	2시간	자체교육

(이상)